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정성조사 근거 마련 등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5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정성조사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9.

다. 회부연월일 : 2026. 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조사에 따르면, 제품 상당수가 타 정보통신망·전자기기에 심각한 전파 혼신·간섭을 일으키고 있으며, 장기간 전자파 노출·배터리 발화 위험 등으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를 요청하거나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4 신설).
- 나.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접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5 신설).
- 다.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6 신설).
-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의 이행, 결과 보고 및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17 신설).

Ⅲ. 검토의견

1.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정성 조사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4 신설).
- 제58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정보 등을 조회, 사용하거나 제공, 누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4조제7호 신설)
-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방송통신망에 간섭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15 신설).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해당 제품 정보의 삭제 등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

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 16 신설).

○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삭제 권고의 이행, 결과 보고 및 불복 신청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17 신설).

- 제58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9조의2)

현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의14(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해외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5(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

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
가 있는 경우

3.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
국의 제조·수입·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
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을 받고 한 시정·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수
거 등

4.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
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
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
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접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6(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가재등의 삭제등의 권고

<신 설>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제58조의1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

<신 설>

우에는 그 권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권고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삭제 등의 권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17(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

신판매중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16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제58조의16제4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

②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u>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u> ③ <u>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④ <u>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제84조(벌칙)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58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정보를 조회·사용하거나 제공·누설한 자</u> 제89조의2(과태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u>거짓으로 통보한</u>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1.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u>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u> 2. 제58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u>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	---

나. 검토사항

- 현행 「전파법」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¹⁾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각종 기술기준 및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의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전파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2)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

- 한편,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사용 목적의 기자재를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들이 법령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게 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법령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1대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음.³⁾
- 그러나,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아 반입된 제품 중 전자파 혼신을 유발하거나 전자파 노출량 기준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일지라도 재판매

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 3)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및 제4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및 자기적합확인

나 이용자의 이동에 따라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방송통신기자재등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안전성조사, 그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반송 등 조치나 판매자에 대한 삭제 권고·공표 및 관련된 절차의 수행을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도입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은 관리제도가 도입된다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점검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여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행정력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58조의15 및 제58조의16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은 제품안전기본법(법률 제21159호, 2026. 6. 3.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및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⁴⁾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

는 것으로 보임.

-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한 안전성조사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4) 법률 제21159호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개별 법령(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그 주체로 하고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부분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당 부분 중복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임.⁵⁾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제1호나목의 사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에서 규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 모두 포섭되므로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개정안 제58조의16에 따른 위해성 확인 기자재 관련 권고 등에 관한 대리사항을 제외하면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련된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게 되어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58조의15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성조사 결과 관세청장에게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여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전파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 미준수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실태조사, 안전성조사, 위해성 확인 제품 정보 삭제 권고,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 등’이 현행 법체계(전파법, 전자상거래법, 제품안전기본법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7. 1. 21.] 제20조의5

등)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제 우려와 규제 신설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